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이 조례안은 2003년 7월 1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03년 7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1. 개정이유

- 농업관련업무 이원화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으로 민원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중 채소·특작·과수·화훼경쟁력제고업무가 사회산업국 업무와 중복으로 삭제하고 관광농업 개발업무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함(안 제6조)

3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농업관련업무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금번 조정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분장사무 중 “채소·특작·과수·화훼경쟁력 제고업무”는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“관광농업 개발업무”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임.
- 그동안 농업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고 다소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나 농축산과에서는 농업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각종농업정책기능 수행 등 전반적인 농업행정을 수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지도와 연구업무 위주로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분장으로 사료됨.
- 따라서,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원, 민박마을 조성 등 농촌 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은 사업의 중요성과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축산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- 또한, 경기도에서도 농촌관광농업 개발업무를 농업정책과와 농산유통과에서 관장하고 있어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농축산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.

지 방 자 치 법

제 102조 (행정기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시·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